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4. 28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년 4월 21일
- 나. 제 출 자 : 윤준용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
제1차 회의(2015년 4월 27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윤준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영주차장 운영 시 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대민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확대
(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<비고> 22호 신설)

가. 공무 수행차량

나.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

-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수행차량 등 대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대민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으로
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동별 각 1대 차량으로 규정함.
- 동 자율 방역단과 동 자율 방법대는 감염병 예방과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,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등 「자원봉사 활동기본법」에서 정의하는 자원봉사 단체로 볼 수 있음.
- 따라서,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 해당 단체의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,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.
-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되고 시설관리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

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으나,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과 주차장 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예측을 더욱 심도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사전에 등록된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이 해당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, 대상 차량의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 신설한 <비고> 22호에서 “공무 수행차량” 부분은 삭제하고, 면제 대상으로 사전에 등록된 차량은 “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” 주차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수정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55	관 련 호
----------	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4. 4. 27

제 출 자 : 박미영 위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사전에 등록된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이 해당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, 대상 차량의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신설한 <비고> 22호에서 “공무 수행차량” 부분은 삭제하고, 면제 대상으로 사전에 등록된 차량은 “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” 주차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〈비고〉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〈비고〉 1~21(생 략) <u>22.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</u> <u>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</u> <u>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은 주차장 관리</u> <u>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</u> <u>각 1대에 한한다.</u>	〈비고〉 1~21(현행과 같음) <u>22.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</u> <u>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</u> <u>할 수 있다. 단,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</u> <u>동별 각 1대에 한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윤준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3월 일

발의자 : 윤준용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공영주차장 운영 시 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대민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확대

(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<비고> 22호 신설)

가. 공무 수행차량

나.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

-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
같은 법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15. 4. 8 ~ 4. 14) : 의견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<비고>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은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[별표 1]

현행	개정안
<비고> 1 ~ 21(생략)	1 ~ 21(현행과 같음) 22. <u>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법 순찰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동 방역 및 동 방법 순찰 차량은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.</u>
<신설>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55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4. 4. 27

제 출 자 : 박미영 위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사전에 등록된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, 대상 차량의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신설한 <비고> 22호에서 “공무 수행차량” 부분은 삭제하고, 면제 대상으로 사전에 등록된 차량은 “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” 주차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<비고>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〈비고〉 1~21(생 략) 22.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법 <u>순찰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</u> <u>할 수 있다. 단, 동 방역 및 동 방법</u> <u>순찰차량은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</u> <u>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</u> <u>대에 한한다.</u>	〈비고〉 1~21(현행과 같음) 22. 동 방역 및 동 방법<u>순찰차량에 대</u> <u>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</u> <u>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사</u> <u>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</u> <u>에 한한다.</u>